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265호

**규제개혁 인센티브 심의위원회 규정의  
폐지 훈령(안) 행정예고**

2013. 12. 06

**중 소 기 업 청**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265호

「규제개혁 인센티브 심의위원회 규정」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2월 6일  
중소기업청장

##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(안) 행정예고

### 1. 폐지 사유

-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「규제개혁 인센티브 심의위원회 규정 (’05.11.3 제정)」을 폐지

### 2. 주요내용

-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오랜 기간 운영되지 않아 폐지
  - ’05.11월 제정, 개정 이력이 없으며 향후 운영 가능성이 매우 희박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3. 12. 6 ~ 12. 25 (20일간)
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

5. 의견제출

「규제개혁 심의위원회 규정」 폐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(우편번호 : 302-701, 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/ 참조 : 규제영향평가과, 전화 042-481-4344, 팩스 042-472-327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붙임 1. 규제개혁 인센티브 규정의 폐지(안)

2. 폐지하려는 훈령(규제개혁 인센티브 규정)

(붙임1)

## 규제개혁 인센티브 심의위원회 규정의 폐지(안)

중소기업청 훈령 제2013-000호

「규제개혁 인센티브 심의위원회 규정(훈령 제200호)」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합니다.

2013년 12월 00일

중소기업청장

(붙임2) 폐지하려는 훈령

## 규제개혁 인센티브 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2005. 11. 3 중소기업청 훈령 제200호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규제개혁 우수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에게 혁신마일리지, 인사우대,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중소기업청 및 소속기관의 과(담당관실 포함)단위조직의 4.5급이하 일반직·별정직·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 제2장 규제개혁인센티브 심의위원회

제3조(규제개혁인센티브심의위원회) 이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인 심의 및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규제개혁인센티브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위원회 구성)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규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혁신인사기

획관이 되며, 위원은 각국의 정책과장, 규제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③회의는 매월 심의 안건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취합하여 개최·의결하되, 사안의 긴급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규제업무담당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,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위원회 회부된 안건의 심의
2. "인센티브 부여 기준"개정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

### 제3장 인센티브제도 심의절차

제9조(안건제출) ①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심의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국(부)·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간사는 제출된 심의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건심의)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건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.

1. 개선과제 가능성
2. 경제성
3. 만족도 및 기대효과

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11조( 인센티브부여 기준)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안건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"인센티브부여 기준"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심의결과 통보등) ①회의를 개최한 후에는 심의안건에 대

한 규제개혁 안건으로의 채택여부, 인센티브 부여 등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회부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타 시행세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. 11. 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서식>

## 위원회 안건 심의 의뢰서

1. 규제 안건	
----------	--



2. 주요 개선 내용	
3. 기대효과	

규제개혁인센티브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  
기와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.

2005. .

심의의뢰자 (인)

규제개혁인센티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

〈별지 제2호서식〉

간 사	위 원 장

## 규제개혁인센티브심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
2. 장 소 :
3. 참 석 자 :
4. 회의내용 :

○ 규제 안건	
○ 주요 개선 내용	
○ 심의내용	
○ 심의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규제개선 과제 선정 적정성 여부</li> <li>○ 지급대상자</li> <li>○ 지급방법(마일리지, 인사우대, 해외여행 중 택일)</li> <li>○ 사후처리사항 등</li> </ul>

<별지 제3호서식>

## 심 의 의 결 서

규제개혁인센티브심의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 함.

가·부

위원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)

구	분	심의내용		서명	의견
위원장					
부위원장					
위원					
“					
“					
“					
“					